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60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치료보호·치료감호 종료 시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	3

I. 개요

1.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6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명옥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8.

(3) 회 부 일 : 2024. 7. 9.

나. 제안이유

마약류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3%로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이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나. 처방전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치료보호·치료감호 종료 시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치료보호·감호가 종료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안 제2조의2제4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추가하며(안 제32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기관의 시설·인력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6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생략)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법률 제196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 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현행과 같 음) ② ----- -----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u>주민등록번호</u>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③ (생략)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u><후단 신설></u> 1. ~ 4. (생략) ③ ~ ⑫ (생략)	----- ----- ----- -----<u>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u>----- -----<u>. 다만, 질병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질병분류기호와 질병명은 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u>.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나. 검토의견

- (안 제2조의2제4항: 사후관리체계 마련)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40조제2항1)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고, 법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2)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음.
- 그런데,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별도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³⁾.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3) 다만, 식약처에서는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이 본인의 요청에 따라 재활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밝힘.

□ 재범률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⁴⁾을 고려할 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이후에도 재활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⁵⁾에 따른 치료감호 대상자는 마약류 중독자 외에도 다수 있으므로, 사후관리체계 마련 시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

(단위: 명)

구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치 료 보 호	합계		260	143	280	421	641
	입원	자의	89	48	90	81	226
		검찰의뢰	2	1	-	-	-
		기타의뢰	-	-	-	-	-
	외래	자의	153	86	189	326	401
		검찰의뢰	16	8	1	14	14
		기타의뢰	-	-	-	-	-
치 료 감 호	합계		30	13	18	18	19
	마약		0	0	0	0	0
	향정		30	13	18	18	19
	대마		0	0	0	0	0

* 자료: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립법무병원)

4) 2023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2.8%이며, 재범인원은 9,058명임.
(자료: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 - 대검찰청)

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중,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 (안 제32조제2항: 처방전 기재 의무사항 추가)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처방전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2조제5호자목6)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를 의미함.

□ 「의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때 질병분류기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질병분류기호를 기재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고⁷⁾,

「수의사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⁸⁾에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
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7)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
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3. 질병분류기호

8)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단
서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따르면,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동물의 질병명은 기재대상이 아님.

□ 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기재한 처방전의 경우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면서, “질병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만 이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함에 따라 환자 요청 시에도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최근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처방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던바, 처방전에 환자의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과다처방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3.8.2>

처 방 전

발급 연월일		년 월 일		발급 번호			
처방전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일간		처방전 유효기간 내에 구매해야 합니다.			
개별 처방 []	동물의 이름			동물의 []소유자 []관리인	성명		
	동물의 종류				전화번호		
	성별/연령/체중 등	암·수/	세/ kg/ 임신 여부		생년월일		
군별 처방 []	축사번호			[]동물병원 []축산농장	농장명		
	동물의 종류				명칭		
	마릿수	총	마리		전화번호		
처방 수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의사 면허번호	제	호	
필/선	성분명		용량 (1회 투약량)	용법	처방일수 (투약일수)	판매 수량 (포장 단위)	비고
	권장 제품명						
의약품 판매 내용							
판매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판매 약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판매 연월일				비고			
필/선	판매 제품명(제조사)	규격(포장 단위)	판매량	유통기간	휴약기간	비고	

□ 다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본인의 질병분류기호·질병명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의무적으로 노출하게 할 경우 정신질환 진료 자체를 거부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환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에 대하여 예외 없이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안 제40조제2항: 치료보호기관 시설·인력 비용 지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기관의 시설과 인력 확보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 제40조제5항9)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및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의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입원비·외래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음.

□ 또한, 2024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등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 2024년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예산내역 >

❶ 치료비 지원: 국비기준 4.5억원

- 판별검사, 치료보호(입원·외래치료비)에 드는 비용 지원

❷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지원: 12억원 [신규]

- 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교육훈련비 등): 9억원 (개소당 1억원)
- 성과보상비: 3억원(A등급 2억원, B등급 1억원)
(운영비 지원대상 기관 중 치료보호 실적과 의료 질 관리가 우수한 기관)

❸ 치료보호기관 안전환경개선: 5억원 [신규]

- 운영비 지원대상 기관 중 건물·시설·장비 등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관에 환경개선비(시설 개보수, 장비 보강 등) 지원

*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개정안은 치료보호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보호기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치료보호 대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¹⁰⁾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 조치로 생각됨.

10) 연도별 치료보호 현황: ('21) 280명 → ('22) 421명 → ('23) 641명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보건복지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인프라 향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 마약류 중독 치료는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지만 별도의 지원책이 없어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에 소극적이므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 현행법 제40조제5항에 국가가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치료보호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한의사협회) 치료보호·치료감호 종료 후 관리체계 마련과 치료보호 관련 예산 확충 및 지원의 필요성에는 이견 없음.
 - 다만, 처방전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하는 안 제32조제2항의 경우, 환자의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함.
- (대한병원협회) 현행 의료법령에 따라 의사가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때 질병분류기호 등을 기입하고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504

